
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박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8.

발의자 : 박인숙 · 정병국 · 유승민

신보라 · 강석호 · 이명수

김성원 · 김석기 · 이군현
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가.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·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

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어야 함(안 제17조의2제1항·제2항).

나.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“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”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과의 형평성을 맞춤(안 제17조의2제1항·제2항).

다.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0조의6 신설).

라.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,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제3항 신설).
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“자치위원회 또는 학교”를 “학교”로, “이내,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”를 “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”로 한다.

제17조의2제2항 중 “자치위원회가”를 “학교의 장이”로, “이내,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”를 “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”로 한다.

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고,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6(학교전담경찰관)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·징수하며,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제20조의6(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) (생략)</p> <p>제22조(별칙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 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20조의7(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) (현행 제20조의6과 같음)</p> <p>제22조(별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 감이 부과·징수하며,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 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
---	--